

SOGI 콜로키움(2014. 4. 26)

**동성애 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특성과 법원의 태도**

심리사회적 부검  
(psycho-sociological Autopsy) 결과를 중심으로

박지영(상지대학교)

## 들어가며..반성(反省)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아이들을 잃었다. 이 새싹같은 아이들을 잃은 다음에서야,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우리 어른들의 반성과 자책이 과연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슬픈 책임감과 통탄감을 견딜 수 없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나마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 생명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고자 한다.



내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된다  
(Käthe Kollwitz, 1942)

# 목 차

1.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논의
2. 심리적 부검 분석결과를 통해 이해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집단괴롭힘과 자살특성
  - 1) 심리사회적 부검
  - 2) 심리사회적 부검 결과 1. 집단 괴롭힘 맥락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요소
  - 3) 심리사회적 부검 결과 2: 성적 소수 청소년의 자살 특성
3. 마무리하며

# 대법원 판결(선고 2013다203215 판결)에 대한 비판 논의

박지영(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3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2013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2009. 11. 29. 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날 22:00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의

2009년도 청소년 M의 자살과 관련하여, 자살의 원인인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

1)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살은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단선적이지 않고 매우 복합적인데다 이러한 자살 원인상황을 사망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관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살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일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살 원인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본 발표자가 분석한 증거서류 곳곳에서 이러한 예측 요인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인(사회 통념상) 정도에서 사망자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증후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 정리할 수 있다.

#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의

첫 번째는 2009년 9월에 실시한 학교에서 실시한 SSI검사(자살사고검사)와 B야(우울선별 검사) 등에서 사망자의 우울과 자살사고가 높게 선별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조처는 일단, 사망자를 자살위험군으로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 혹은 의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1월 27일, 사망자가 사망 3일 전 작성한 반성문 뒷면 메모의 기록내용으로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하는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내 저는 이기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이 자살 혹은 뭔가 사망자 자신에게 위기 상황을 가져올만한 심리상태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 메모에서 '정말 참기힘든', '친구들이 괴롭혀도 선생님께 아무런 말로 하지 않고 나왔다' 등의 표현은 사망자가 거의 지금까지 유지했던 자기 통제력과 외부의 도움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혼자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의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심각한 폭력이어야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집단괴롭힘인가?

모든 학대, 폭력, 희롱, 자살의 현상을 진단하거나 판단 시 전문가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상황/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다. 언어나 정서적 학대/폭력은 ‘객관적으로’ 학대/폭력이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긴급한 상황, 위기상황임을 인지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학대/폭력행위의 객관적인 증거 성향의 모호함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도움, 보호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학대/폭력의 지속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위기상황이 주변사람, 혹은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무기력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 혹은 그 누구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신념, 즉 학습된 무기력감을 누적하게 된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학대/폭력 상황에 저항하거나 탈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극심한 불안, 우울, 자해 등의 심리행동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폭력은 그 속성상 빈도나 수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발생' 되었다는 것을 사회는 경계해야하는 것이고, 제3자 입장이나 가해자의 관점에서 공격이나 고통의 의도성, 정당성을 입증하려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인식한 고통의 수위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의

3)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집단괴롭힘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살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는 별개로 생각해야한다는 논리는 이 두 개의 문제가 상호 배타적일 때 성립될 수 있는 논리이다. 집단괴롭힘과 자살의 연관성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미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와 미 법무부 산하 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보고(2010)에 따르면 2008년에 38건의 학교폭력 사망하건 중 15명은 살해, 7명은 자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진 않았으나, 학교생활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 집단괴롭힘 등이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박영숙, 2009; 권재기, 2011; 문대근, 이진주, 이종각, 김정민, 문수백, 2013).

#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사망자가 급우들로부터 명백하게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 수치감 느꼈을 것에 대해서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측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며, 이미 사망자가 작성한 반성문들과 학교에서 실시한 우울, 자살사고검사 결과, 그리고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친구와의 싸움 이후 기록한 죽음 관련 메모 등 자살을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후는 여러 시간대와 장소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사망자의 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제안하거나, 혹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집단괴롭힘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방임한 것, 그리고 사망자의 11월 27일 반성문에서 명백하게 '자신이 사라져야 될 것 같다'는 극단적인 내용의 메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심리적 위기를 간과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 학교측의 학생 보호책임을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괴롭힘의 반복과 지속, 그리고 이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부재, 사망자에게 계속 반성문을 작성케하거나 집단괴롭힘의 원인제공자로 낙인화한 맥락 등을 종합해볼 때, 대법원 판결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 심리적 부검 결과를 통해 이해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집단괴롭힘과 자살특성

# 심리사회적 부검(Psycho-sociological Autopsy)

심리적 부검은 자살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자살사망자의 개인 기록, 서류, 경찰 및 의료기록이나 여타 관련 자료들, 그리고 유가족이나 친구 등 사망자의 유의미한 사람 등과의 심층적인 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자살과 죽음을 초래한 여러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조사방법임(Schneidman, 1977).

일반적으로 심리적 부검을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

1. 사망자에 대한 인적 정보(성명, 성별, 연령, 주소, 결혼상황, 종교, 직업 등)
2. 의사의 사망증명서(사망원인, 사망의 종류 등)
3. 사망자의 개인생활사(개인력, 사회력, 병력 등)
4. 사망자의 가족력
5. 사망자의 죽음을 앞두고의 변화
6. 최근(며칠 전부터 1년 사이)의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사망자 자신의 특유한 생활방식의 변화 유무
7. 사망자가 죽음을 앞두고 면접/상담/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면접자(의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등)의 진술서
8. 유서가 있다면 그 내용

## 집단 괴롭힘 맥락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요소 : 자살 전 스트레스 상황-"급우들의 무조건적인 무시, 욕, 비난, 공격"

첫 번째는 사망자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고통

- 사망자가 여성스런 목소리와 말투, 화장을 하거나 걸그룹 춤을 추는 등 여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망자가 관심있는 급우의 팔짱을 끼는 등 동성간에 불편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
- 급우들의 행위는 사망자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 방어적인 수준을 넘어서
  - '빠개진 년', '걸레년', '개새끼', '가짤다' 등의 욕설
  - '니 왜 사노? 그 다 빠개진 면상이랑 그땐 몸매하고 왜 사노? 나 같았으면 뛰어 내리겠다" 네 주제를 알고 설치라"는 등의 조롱과 비난,
  - 사망자의 옷에 감기약 시럽과 지우개 가루 등을 쏟고, 사망자를 모든 급우가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등 청소년기 사망자가 모욕감, 수치감을 느낄 정도의 집단적인 언어폭력과 안경이 날라가고 입이 부르틀 정도의 신체적인 폭력 행사

## 집단 괴롭힘 맥락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요소 : 자살 전 스트레스 상황- “내 편 없는 소외된 싸움, 발버둥”

두번 째, 폭력이 거의 두 학기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사망자가 혼자서 급우전체를 상대로 자신을 보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망자가 일찍 이들과의 관계나 자기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학급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굽히지 않기 위해 선도부장, 그룹장의 역할을 수행

<-> 반응) 급우들은 선도부장, 그룹장인 사망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시, 입장을 곤란하게 함, 교사에게 책임추궁을 듣게 함 등

- 걸그룹 춤을 추거나 급우들에게 팔짱키는 등 자신이 원하는 행동 지속

<-> 반응) 급우들의 놀림, 조롱, 혐오감, 강력한 행위중단 요구 등

- 끊임없이 집단으로 괴롭히는 급우들에게 같이 욕을 하거나 메모 등을 통해 분노, 자기 감정 등을 표현

<-> 반응) 아무도 사망자의 메모, 호소에 상관하지 않음. 사망자 호소가 받아들여지거나 가해학생들을 통제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집단 괴롭힘 맥락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요소 : 자살 전 스트레스 상황-“배신, 고립, 절망”

세 번째, 사망자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없음

-(담임을 믿고 말한 나의 성 정체성 이야기를 담임이 부모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지켜준다  
그래놓고.. 그래놓고.**(부모 인터뷰)'

- B에세 맞고 나서 반성문 앞면에는 '다 제가 잘못된 일이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으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라고 적었으나, 그 뒷면에는 '아이들에게 경위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얻어맞고 밥먹으러 갈 정도라고 저를 생각하셨나요?...**(중략) (선생님, 제게 J에게) 시비 많이 걸었네!!**”라고 **하셨지요?** 그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뭘 쳐다보노? 드롭다 치아라'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다 들리게 제 험담하는데 그걸 참았구요...(이 외 급우들의 여러 괴롭히는 행동들을 나열함)(갑5-4)

- (외삼촌이 사망자에게) 담임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에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함(P 증인신문조서)

# 집단 괴롭힘 맥락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요소 :자살 전 스트레스 상황 - “갈등”

넷째, 어른과 자신의 현재 정체성 간 괴리, 갈등

-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 간 갈등

- 사망자는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 가능한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사망자가 남자답게 행동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기대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거나 자신이 현재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이 부모에게 전달될 경우, 부모가 느낄 실망, 고통에 대한 두려움

- 부모가 **사망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음

- 교사의 사망자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 비수용적 태도

- 상담결과 '남자 목소리로, 남자다운 행동을 연습'하는 것을 권유받음

- 교사들이 사망자에게 “계집애”라 호칭함

- 급우들과의 갈등 원인을 사망자의 여성적인 행동,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함

따라서 교사에게 사망자는 피해자로 인식되고 보호되지 못함

# 집단괴롭힘과 학교 대응에 나타난 성적 소수 청소년에 대한 상황 해석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제공자

- 집단괴롭힘의 원인이 성적소수 청소년들의 독특한 행동이나 특성으로부터 기인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 가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든 가해자
- 가해자들의 행위는 타당한 반응 혹은 가해행위로 볼 수 없는 반응적 행위로 해석

피해자인 동시에  
보호할 수 없는 대상

- 상담과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능한 범주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
- 따라서 학교에서는 보호할 수 없는 대상

## 자살특성: 자살직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위기

- 첫째, 급우들에 대한 분노로부터 자기비난으로

집단괴롭힘에 대한 사망자의 초기 심리적 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 대한 자조, 반성, 절망적인 태도로 변화. 결국 자신을 제거함으로써 상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생각/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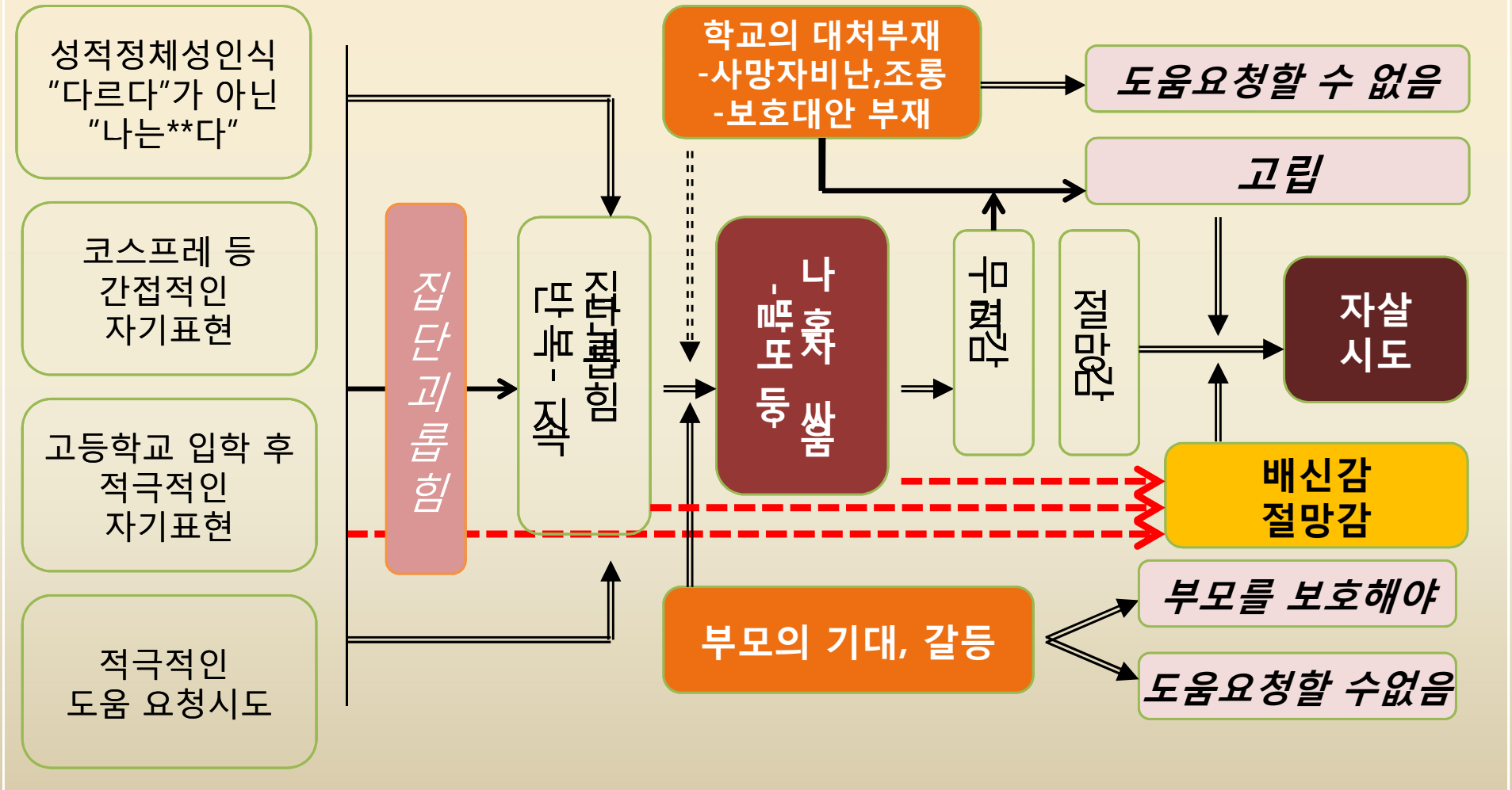
- 다들 미친놈이라고 하길래 정말 미친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네요 진짜 죽일거라고 말해도 그 모양이네요. 아이들이 (데스리스트를) 보라고요.. 그냥 보고 버리면 그만이고 샘끼 들어가면 폭탄이겠죠(갑5-1)
- 처음에 저도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하는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갑5-5. 11월 27일 메모).

## 자살특성: 자살직전 스트레스 상황들과 심리적 위기

- 둘째, 자신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필요했으나 ...
  - 학교, 가족 내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좌절, 우울감,
  -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괜찮아질 것',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
  - '이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음', '나 혼자'라는 소외감, 무기력감
- 셋째, 11월 26일 사건과 이로 인해 무단 조퇴한 것에 대해 담임에게 꾸중을 듣고, 이후 집에서조차 부모에게 혼이 난 사건 이후 심경의 변화.
  - 담임과 부모 모두 사망자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드러나 상황, 행동결과에 만 초점을 두고 사망자를 야단친 것에 대한 좌절감
  - 담임이 이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도 부모상담을 바로 통보한 것이 사망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 아무도 자신의 입장, 마음, 상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

# 본 사건 사망자의 자살 과정

고립, 소외감: '세상엔 나 하나.....'



# 성적소수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와 자살에 대한 법원 태도 : 1심과 3심 판결 비교

1심	3심
<p>(사망자가)동성애적 성향 등으로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p>	<p>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움</p>
<p>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괴롭힘에 가담한 학생들이나...(중략) 이 사건 괴롭힘은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p>	<p>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p>

# 성적소수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와 자살에 대한 법원 태도 : 1심과 3심 판결 비교

1심	3심
<p>(심리검사결과)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적절 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한 채 A의 동성애적 성향 및 우울감을 알리 면서 전학을 권고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 치만을 취하였던 점</p>	<p>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 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을 예견 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 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괴롭힘 자 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 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p>
<p>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교육하여야 할 지위 에 있음에도 A과 반 학생들 사이에 마찰 이 일어난 경우 A의 예민함과 동성애적 성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A을 변 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려했던 점-손해배상 의무 있음</p>	<p>*피해자의 집단괴롭힘 원인이나 성적 소수 특성 에 대한 반영 없음</p>



# 성적소수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와 자살에 대한 법원 태도 : 1심과 3심 판결 비교

- 성적 소수 청소년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 판결 기준 모호: 판사 개인 관점에 근거한 개별적인 해석
-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
    -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견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함(1심)
  - 2) 성적 소수 특성에 대한 교사,학교의 접근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
    - 성적 특성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려했던 부적절한 접근방식(1심)
  - 3) 집단괴롭힘의 판정기준
    - 1심: 피해자의 발달단계, 성적 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한 심리적 고통의 심각성과 자기 대처 수준 고려(개별화)
    - 3심: 사회적 통념

## 성적소수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와 자살에 대한 법원 태도 : 1심과 3심 판결 비교

- 사례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 직면과 회피
  - 1) 본 사례는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사건이지만 집단 괴롭힘의 원인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인식과 관점을 반영하느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상이함
    - 1심: 피해자의 집단 괴롭힘의 원인이 성적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판결에 반영하되, 성적 특성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성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나 가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소수자일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집단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력감 등을 반영함
    - 3심: 집단 괴롭힘과 자살과의 영향력, 자살예측성에만 초점  
즉, 피해자가 집단 괴롭힘 맥락에서 어떠한 입장이었는가에 대한 해석, 반영 부재
  -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교사 책임에 대한 해석 차이

## 성적소수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와 자살에 대한 법원 태도 : 1심과 3심 판결 비교

-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학교, 교사 책임에 대한 해석 차이
  - 1심: 집단 괴롭힘의 원인 통제, 집단 괴롭힘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교의 태도와 개입의 적절성, 그리고 자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합적으로 해석
  - 3심: 판결의 초점을 집단 괴롭힘의 사실과 자살의 예측가능성으로 이분화함.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개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집단 괴롭힘의 자살 영향력을 명백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음, 그리고 가출, 등교거부, 방황, 피해자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한 정황 등 피해자의 행동 중심적인 상황해석을 통해 본 사건의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함.

## 마무리하며

“분명 사망자의 행위는 또래 남자아이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한 사망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폭력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사망자의 행위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할 순 있어도 나와 다른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2014. 1. 15. 전문가 진술 중)”

혐오, 차별, 불평등, 편견, 그리고 폭력과 같은 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어선 안되는 악(惡)입니다. 더우기 다수의 힘이 소수의 누군가에게 이러한 악(惡)의 무기를 휘두르고, 이 상황에 대해 다수가, 어른이, 사회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사회적 통념에서, 법 앞에서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이제 자신에 대해 눈을 떠가는 아이들,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이 다수의 친구들과 다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 막막함,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이 혼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혼자서 견뎌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5년 전 안타깝게도 한 아이를 잃은 지금에서야, 더 이상의 아이들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다짐해봅니다.